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19가합5806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이진성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본
담당변호사 김세현, 신정우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765,033원 및 그 중 252,473,049원에 대하여는 2019. 8. 6.부터, 346,667,318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115,455,451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각 2020. 3. 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6.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3. 접수 제38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는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28. 접수 제427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6.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3. 접수 제38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9. 3.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등

- 1) 원고는 2016. 7. 1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명칭을 모두 생략하고, 은행 명칭만 기재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6. 7. 11.부터 2017. 7. 10.(이후 2019. 7. 9.까지 연장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7. 15.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위 E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원고는 2016. 10. 12. 피고 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14,000,000원, 보증기한 2016. 10. 12.부터 2017. 10. 11.(이후 2019. 7. 9.까지 연장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10. 26.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3) 원고는 2016. 10. 31.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340,000,000원, 보증기한 2016. 10. 12.부터 2017. 10. 11.(이후 2019. 7. 9.까지 연장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10. 26.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4) 제1, 2, 3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위 금액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자율 내지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손해금, 소정의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그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 1) 피고 회사는 2019. 5. 3.경 이후 대출금 원금 연체로 인하여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9. 5. 20. 피고 회사가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사고발생일자는 2019. 5. 3.)가 발생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2019. 8. 6.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에 대출원리금 271,784,359원을, 2019. 9. 11.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346,667,318원을, 2019. 10. 31.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은행에 대출원리금 115,455,451원을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 3) 원고는 그 중 합계 19,311,310원(= 2019. 9. 2.자 18,970,600원 + 2019. 9. 11.자 340,710원)을 회수하여 제1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그 잔액이 252,473,049원(= 대위변제금 271,784,359원 - 회수금 19,311,310원)이 되었고,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일부변제충당금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9. 8. 6.부터 각 충당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19,185원{= (18,970,600원 × 8% × 28일/365일) + (340,710원 × 8% × 3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었다.
- 4) 원고가 각 신용보증한 대출채무를 피고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신용보증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379,470원[= 270,000,000원 × 19/1,000(적용보증료율 1.4%에 0.5%를 가산한 요율, 이하 같다) × 27일2) / 365일],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670,560원(= 114,000,000원 × 19/1,000 × 113일3) / 365일)이고, 이를 합산한 위약금 합계는 1,050,030원(= 379,470원 + 670,560원)이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근저당설정 등

- 1) 피고 B은 2019. 3. 25. 피고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 명의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B의 처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제198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9. 6. 11. 자신의 법률상 처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6.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제389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 C은 2019.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채권최고액 2억 8,600만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제427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2010. 12. 9.자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F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1. 23.자로 채권최고액 1억 5,100만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F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 9.자로 채권최고액 5,700만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F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진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제1의 가, 나항의 각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피고 회사와 그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765,033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71,784,359원 +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346,667,318원 +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15,455,451원 - 회수금 19,311,310원 + 확정손해금 합계 119,185원 + 위약금 합계 1,050,030원) 및 그 중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잔액 252,473,049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9. 8. 6.부터,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잔액 346,667,318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9. 9. 11.부터,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잔액 115,455,451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9. 10.

31.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3. 5.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연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채무 초과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 C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전득자인 피고 D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피고 B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인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2019. 3. 2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6. 13.경 이미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서 위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 B 사이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2016. 7. 11.경부터 2016. 10. 31.까지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2019. 5.경 대출금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2019. 8. 6. E에게 대출원리금 271,784,359원을, 2019. 10. 31. F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15,455,451원을, 2019. 9. 11. 위 중소기업은행에게 3차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346,667,318원을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및 연대보증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한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이 법원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019. 3.경 시가는 625,000,000원이었고, 원고가 2019. 3. 25.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F은행 명의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408,000,000원이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019. 6.경 시가는 630,000,000원이었고, 원고가 2019. 6. 1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688,000,000원이고(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고 D 명의의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포함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 6. 13.경을 기준으로 F은행 명의의 3건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40,051,155원[(원금 70,000,000원 + 이자 22,380원) + (원금 270,000,000원 + 이자 28,775원)]이었다.

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은행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G)에서 F은행은 2020. 8. 27. 기준으로 청구할 채권 합계액이 371,307,407원(= 원금 345,818,124원 + 이자 25,489,283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와 F은행은 원고가 일부 대위변제를 통하여 F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일부 대위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채권최고액 57,0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2017. 1. 9. 접수 제188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F은행이 16,144,394원, 원고가 40,855,606원을 각 배당받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배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내용대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6. 1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원고가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피고 D 명의의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총 340,051,155원으로서, 이는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2019. 6.경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15,000,000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 시가 630,000,000원 × 피고 B의 지분 1/2)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②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었던 2019. 3. 25.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에 설정된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는 최소 340,000,000원 이상(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금인 70,000,000원 및 270,000,000원을 합산한 것이다)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2019. 3.경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12,500,000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 시가 625,000,000원 × 피고 B의 지분 1/2)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③ 여기에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F은행 명의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약 339,999,999원으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보다 다액이었음을 자인하고 있음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던 2019. 3. 25.과 2019. 6. 13.을 기준으로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비교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잔존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전흔자, 판사 김진호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H에 있는 I아파트 J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K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아파트

1층 121.98㎡

2층 ~ 17층 각 211.3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H 대 2642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8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6424분의 47.5. 끝.

1) 원고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주위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와 피고 C, D를 상대로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아울러 피고 D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고 판단한다.

2)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인 2019. 7. 10.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일인 2019. 8. 5.까지의 기간

3)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인 2019. 7. 10.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일인 2019. 10. 30.까지의 기간